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치				시행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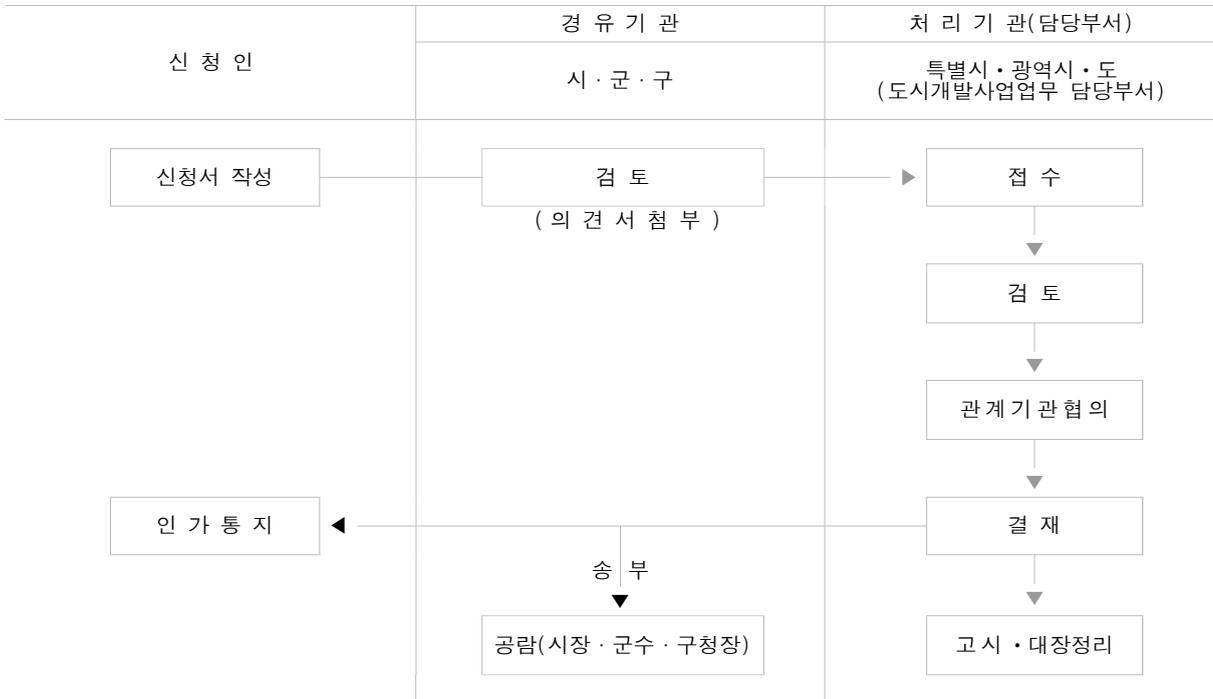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 8.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9.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 10.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11. 위치도
-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 처리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